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15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2. 12.

서울특별시의회  
유정희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정희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고,  
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
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 
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6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 
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 
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□ 안 제6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서  
시장이 시 공사·공단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 
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□ 현재 서울도서관에서는

「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지역서점 지원계획) 및

제6조의2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에 근거하여

자체 장서 확충 시 일정 부분을

지역서점의 도서로 구매하고 있으며,

□ 또한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」

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

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매하도록

유도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더해 서울특별시 지방공사·공단,

지방출자·출연기관 및 자치구의

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

지역서점 활성화 촉진과

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